

제 호		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		
자동차의 표 시	자동차등록번호		차종 및 주행거리	
	차 명		차 대 번 호	
	원동기형식		모델연도	
	제원관리번호		용 도	
	최초등록일		사업용사용기간	
소유자	성명(명칭)		주민(법인)등 록 번 호	
	주 소			
말 소 등 록 일			증명서 용도	
말 소 등 록 구 분			권리관계 여부	압 류: 건 저당권: 건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(시 장 · 군 수 또는 구 청 장) 인				
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
유 의 사 항

1.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,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2.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0항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.

말소등록 사유	신규등록 가능기간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면허·등록·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○ 자동차를 교육·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○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○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	○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
○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	○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
○ 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(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	○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
○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	○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